

#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(이영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991
----------	------

발의 연월일 : 2021. 6. 4.

발 의 의 원 : 이영애 의원  
김재우 의원  
김규학 의원  
김태원 의원  
강성환 의원  
박갑상 의원  
송영현 의원  
이태손 의원  
황순자 의원  
홍인표 의원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지방자치 주민 참여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‘주민조례청구’로 추진된 조례 개정 사례 (대구경제정의실천연합 조광현 처장)
- 나. 기존 「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」를 전부개정하여 지역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장기적 발전 도모
- 다. 시에서 준비 중인 간송미술관, 시립박물관 조성에 앞서 체계적인 계획 수립, 자료소장 전문성 강화, 시민향유 확대 등 도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정의, 기본방향을 규정함(안 제1조~3조)
- 나. 시장과 관련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4조~제5조)
- 다.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9조3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 수립(안 제6조)
- 라. 관련 사업에 대한 경비지원 및 관리 등(안 제7조~제10조)
- 마.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(안 제11조~제19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조 례 안 : [붙임 1] 참조

나. 관계법령 : [붙임 2] 참조

다. 예산조치 : 관계부서 협의 필요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**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**

「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」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**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**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12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박물관”이란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의 시설로 대구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등록된 시설을 말한다.
2. “미술관”이란 법 제2조제2호의 시설로 시에 등록된 시설을 말한다.

**제3조(기본 방향)**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정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.

1. 지역 문화자원으로서 가치 증진
2. 문화예술의 질적 수준 향상
3. 시민의 문화 향유능력 신장
4. 지역사회 평생학습기관으로서 공공성 증진

**제4조(시장의 책무)** 대구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·발전시키며, 시민의 문화향유를 증진하기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사업자의 책무)** 사업자는 해당 박물관과 미술관이 지역사회 문화예술의 질적 수준향상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진흥계획의 수립)** ①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5년 단위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
2. 박물관 및 미술관 통계의 조사, 분석 및 보급
3.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모니터링 및 지원사업의 평가방안
4.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7조(경비 지원)**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법인·단체에서 행하

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시설 개·보수나 신축 등 경비는 제외한다.

1. 전시·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
2.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경비
3. 박물관 및 미술관의 소장자료 연구에 필요한 경비
4.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
**제8조(지원기준)**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수장(收藏) 및 전시자료의 가치성과 우수성
2. 기획, 구성 및 전시 등 사업 완성도
3. 연구업적 및 활용능력
4. 지역사회 공헌도 및 파급효과
5.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

**제9조(지원의 해지)**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무단 휴관하였을 때. 다만, 휴관은 총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2.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
3.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
4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
5. 제8조에 따른 지원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

**제10조(지원경비의 관리)** ① 제7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사업자는 관계 법령 및 「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지원경비를 집행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경비를 환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경비의 환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경비를 환수한 사업자에게는 환수한 날부터 2년간은 지원할 수 없다.

**제11조(위원회 설치)**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**제12조(위원회의 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

1.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
2. 제7조에 따른 경비 보조
3. 제9조에 따른 지원의 해지
4. 법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
5. 법 제18조에 따른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**제13조(위원회의 구성 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
-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-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다만, 시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  - 1.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
  - 2.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
  - 3. 관련법인·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
  -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**제14조(회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.

-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, 장소,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15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**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.

-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  - 1. 해당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  - 2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관련 법인·단체가 해당안건의 자문·연구·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
  - 3. 그 밖에 해당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**제16조(간사 등)**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.

- ② 간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, 서기는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.

**제17조(위원의 해촉)**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.

- 1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- 3.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한 경우
- 4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
**제18조(수당과 여비)** 위원회 위원과 관계분야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대구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9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**부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계법령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·예술·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(文化享有)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6. 2. 3.>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7. 7. 27., 2009. 3. 5., 2016. 2. 3.>

1. “박물관”이란 문화·예술·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·고고(考古)·인류·민속·예술·동물·식물·광물·과학·기술·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·관리·보존·조사·연구·전시·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.
2. “미술관”이란 문화·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·조각·공예·건축·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·관리·보존·조사·연구·전시·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.
3. “박물관자료”란 박물관이 수집·관리·보존·조사·연구·전시하는 역사·고고·인류·민속·예술·동물·식물·광물·과학·기술·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·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·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.
4. “미술관자료”란 미술관이 수집·관리·보존·조사·연구·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·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.

**제9조(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수립)**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·공·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,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·육성,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>

②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을 설립·운영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에 따라 소관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## 제3장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

**제12조(설립과 운영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·관리·보존·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**제12조의2(공립 박물관·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·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·미술관 설립·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(이하 “사전평가”라 한다)를 받아야 한다.

## 제4장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

**제13조(설립과 육성)** ①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. <개정 2007. 7. 27.>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돕고, 문화유산의 보존·계승 및 창달(暢達)과 문화 향유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 시설로서 지원·육성하여야 한다.

③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은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립·운영하여야 한다.

## 제6장 등록

- 제16조(등록 등)** ①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·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,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(이하 “대도시 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사립·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. <개정 2009. 3. 5., 2016. 5. 29., 2020. 2. 18.>
-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(이하 “신청인”이라 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개관 전까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5. 29.>
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5. 29., 2020. 2. 18.>
- ④ 제3항에 따른 등록, 심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